



## "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"

- 제정 1998-05-30 조례 제394호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1999-10-02 조례 제437호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1999-11-10 조례 제456호(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)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02-12-30 조례 제544호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03-04-17 조례 제554호(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)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06-12-20 조례 제666호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)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08-01-09 조례 제710호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)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12-07-12 조례 제910호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14-12-26 조례 제1019호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16-03-01 조례 제1103호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) **개정문**
- 일부개정 2018-12-27 조례 제1228호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) **개정문**

관리책임자	
소관부서	홍보전산과
담당자	-
연락처	02-2241-2100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성북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행·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간행물”이라 함은 성북구 및 소속 행정기관 (이하 “발행부서”라 한다) 에서 대내·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, 팜플릿, 리플릿, CD, 스티커, 포스터, 영상물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1999. 10. 02]

### 제2장 간행물심의위원회

**제3조(설치)** 간행물의 발행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성북구간행물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4조(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2. 12. 30)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,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과 홍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(개정 1999.11.10, 2002.12.30, 2006.12.20, 2008. 01. 09, 2012.7.12, 2016.3.1, 2018.12.27.)

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 2002. 12. 30)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.(개정 2002.12.30)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, 유사·중복 발행하는 간행물의 통·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(개정 1999. 10. 02)
2. 간행물의 판매적부·판매방법 및 판매가격
3. 간행물의 발행부수·배포에 관한 사항 (개정 1999. 10. 02)
4. 홍보물의 디자인, 색도, 내용 등 구성사항 (신설 2002. 12. 30)
5. 영상물의 기획·구성, 연출, 편집·녹음 등의 직정 여부 (신설 2002. 12. 30)
6. 기타 간행물 발행·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회의)**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(개정 1999.

10. 02)

② (삭제 1999. 10. 02)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간사 및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이 되고, 서기는 언론보도담당주사가 된다. (개정 2002. 12. 30, 2003. 04. 17, 2006. 12. 20, 2008. 01. 09, 2014.12.26)

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**제8조(심의 받을 의무)** 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.

1.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비밀문서
2.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
3.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
4. 전단·벽보·포스터·리후렛 및 팸프렛 형태의 홍보물
5. 최초발간사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(신설 1999. 10. 02)
6.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

**제9조(심의절차)** ①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에서는 별지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행물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심의결과 통보 등)**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결정 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한다.

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야 하며,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02. 12. 30]

**제12조(운영규정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간행물의 판매보급

**제13조(판매가격)** ① 위원회는 간행물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·기획 및 편집료·인쇄비·일반관리비 등의 제작 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.

**제14조(판매방법)**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,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 (이하 “판매업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·판매·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성북구 간행물보급업자 (이하 “보급업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15조(계약 취소)**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(이하 “위탁판매자”라 한다)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1999. 10. 02]

**제16조(판매수수료)** 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7조(보칙)** 간행물의 판매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999. 10. 0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999. 11. 10)

제1조 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다른 조례의 개정)

③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중 “감사담당관, 민원봉사과장”을 “민원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칙 (2002. 12. 3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3. 04. 17)

제1조 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

③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중 “문화공보과장”을 “문화체육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“문화공보과”를 “문화체육홍보과”로 한다.

부칙 (2006. 12. 20)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<21>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”으로 하고, “민원감사담당관”을 “자치민원과장”으로 “경영기획과장”을 “기획경영과장”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“문화체육홍보과장”을 “홍보감사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(2008. 1. 9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⑫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“자치민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“홍보감사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“홍보감사과장”은 “홍보담당관”으로, “공보담당주사”는 “언론보도담당주사”로 한다.

[이하 생략]

부칙 (2012.7.12 조례 제910호) 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⑤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기획경영과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부칙(2014.12.26 조례 제1019호)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홍보담당관"을 "홍보전산과장"으로 한다.

부칙(2016.3.1 조례 제1103호)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⑱ 생략

⑲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마을민주주의과장”으로 한다.

[이하 생략]

부칙 (조례 제1228호, 2018.12.27.) 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⑪ 생략

⑫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마을민주주의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⑬ 및 ⑭ 생략